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8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서천호 · 조지연

김상훈 · 김은혜 · 김재섭

김태호 · 정동만 · 김소희

진종오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시장정비사업은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,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인·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은 “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”으로,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제1호 중 “상업기반시설”을 “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상업기반시설”로, “경쟁력이 없어진”을 “점포 수, 매출액 등 경영 실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경쟁력이 없어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1조(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)	제31조(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. 다만, 시장정비구역의 국·공유지 면적(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, 「하천법」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은 제외한다. 이하 제41조와 제47조에서 같다)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상업기반시설</u> 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<u>경쟁력이 없어진</u> 시장	1. <u>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상업기반시설</u> ----- ----- <u>점포 수, 매출액 등 경영실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경쟁력이 없어진</u> -----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